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빈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2019년 하반기부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2017.3.15)한 지역(한양도성 내부 ‘녹색 교통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상시 제한할 예정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별도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일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수준임.

따라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